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 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담인력 1명(5급 1명)과 보호수준 평가제 운영을 위하여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에 제7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로 한다.

7의2. 개인정보 민관협력 자율규제 준수여부 점검

11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9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65”를 “167”로 하고, 일반직 계 “162”를 “164”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57”을 “59”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개인정보정책국) ① ~ ⑥ (생략)	제6조(개인정보정책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자율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u>7의2. 개인정보 민관협력 자율</u> <u>규제 준수여부 점검</u>
8. ~ 11. (생략)	8. ~ 1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1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u> <u>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
12. ~ 14. (생략)	12. ~ 14. (현행과 같음)
15. <u>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u> <u>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u> <u>다)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u> <u>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u> <u>업무평가에 관한 사항</u>	15. <u>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u> <u>수준 평가</u> ----- ----- ----- -----
16. · 17. (생략)	16. · 17. (현행과 같음)
18. <u>개인정보</u>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u>개인정보 보호</u> ----- -----
19. ~ 26. (생략)	19. ~ 26. (현행과 같음)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조정국) ① ~ ⑧ (생략)	제7조(조사조정국) ① ~ ⑧ (현행 과 같음)
⑨ 조사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	⑨ -----

장한다. 1. · 2. (생 략) <u>3. 개인정보 공동규제 준수여부</u> <u>점검(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u> <u>야에 한정한다)</u> 4. ~ 11.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 11.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65</u>		<u>167</u>	+2	
일반직 계	.		.		.		
	.		.		.		
	.		<u>162</u>		<u>164</u>	+2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회복지사무 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u>57</u>		<u>59</u>	+2	
	.		.		.		
	.		.		.		